

#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

의안 번호	616
----------	-----

제안연월일 : 2015. 07. 06  
제안자 : 도시계획관리위원장

## 1. 대안의 제안경위

- 2015년 5월 19일 김인제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494번 「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, 같은 해 6월 12일 서울특별시장의 제출한 의안번호 541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,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, 이를 통합·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.

## 2. 대안의 제안이유

-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및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업무 일원화 등 관계부서의 개정 수요 및 관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,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위해 「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조문내용을 정비함.

## 3. 대안의 주요내용

- 가.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및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업무를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로 일원화하여 절차를 간소화함(안 25조제2항제1호)
- 나. 경관위원회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함(안 제 25조제2항제3호부터 제4호까지).

- 다. 상위법령에서 명시되어 있는 내용 조항 삭제 및 법 조항 변경사항 반영(안 제28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, 안 제29조제1호 부터 제2호까지)
- 라.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등 경미한 조정사항을 반영(안 제 24조제1항제4호)하고,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.

##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경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”을 “「경관법」”으로 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법 제16조”를 “「경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6조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호 중 “언어”을 “받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호 중 “명시한”을 “구체적으로 적은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각 호외 본문 중 “제안하고자 하는”을 “제안하려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“저촉여부”를 “위반여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구청장”을 “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제4호 중 “소요되는”을 “드는”으로 하고, 제11조제2호 중 “산출근거”를 “계산근거”로 하며, 제13조제2호 중 “완료”를 “마친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1항제2호 중 “소요되는”과 같은 조 제2항 중 “소요되는”을 각각 “드는”으로 하고, 제19조 각 호외 본문 중 “승계하고자 하는”을 “승계하려는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증빙서류”를 “증명서류”로 하고, 제21조제1항제5호 중 “소요되는”을 “드는”으로 한다.

제24조제1항제1호 중 “12m”와 “30%”를 각각 “12미터”와 “30퍼센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제5조의5제1항제4호”를 “제2조제17호”로 한다.

제2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

가. 법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, 제8호 및 법 제3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

나. 법 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개발사업중 「주택법」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

제25조제2항제2호 중 “법 제30조제1항제5호”를 “법 제30조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개발사업 중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13조에 해당하는 사항”을 “개발사업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“제34조에 해당하는 사항”을 “제2조제2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”으로 한다.

제28조제1호 중 “법 제6조”를 “법 제7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.

제29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.

제30조제1항 중 “① 영 제26조제9항에서”을 “영 제26조제9항에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임기만료”를 “임기가 끝나기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경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경관법」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“경관사업”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·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.</p> <p>3. ~ 4. (생 략)</p> <p>5. “경관사업자”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자체 장,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자체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.</p> <p>6. “경관가이드라인”이란 건축물, 가로,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「경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6조----- -----.</p> <p>3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----- ----- ----- 받아 ----- -----.</p> <p>6. ----- ----- ----- - 구체적으로 적은 -----.</p>
<p>제6조(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)</p> <p>① 「경관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제안서에 다</p>	<p>제6조(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 제안하려는 ----- -----</p>

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  
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~5. (생략)

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  
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  
항을 검토하여야 한다.

1.~3. (생략)

4. 다른 법령에의 저촉여부

③ (생략)

④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 
관련 기관 및 구청장에게 의견 또는  
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10조(경관사업계획서) ① 영 제8조  
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  
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 
호와 같다.

1.~3. (생략)

4.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방안

제11조(경관사업 심의시 고려사항) 영  
제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경  
관사업의 심의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 
각 호와 같다.

1. (생략)

2.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 
의 적절성

3. (생략)

제13조(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)  
영 제9조제3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  
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

1. (생략)

2.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 
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

-----  
-----.

1.~5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.

1.~3. (현행과 같음)

4. ----- 위반여부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  
-----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-----  
-----.

제10조(경관사업계획서) ① -----  
-----  
-----.

1.~3. (현행과 같음)

4. ----- 드는 -----

제11조(경관사업 심의시 고려사항)  
-----  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 계산근거 -----  
-----

3. (현행과 같음)

제13조(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)  
-----  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 마친 -----  
-----

제14조(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)

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.

1. (생략)
2.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
3. (생략)

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9조(경관협정의 승계자)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(이하 "협정 체결자"라 한다)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1. (생략)
2.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

제21조(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)

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.

- 1.~4. (생략)
5.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

②、③ (생략)

제24조(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) ①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

제14조(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)

① -----  
-----  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2. -----  
----- 드는 -----
3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  
----- 드는 -----  
-----.

제19조(경관협정의 승계자) -----

-----  
----- 승계  
하려는 -----  
-----  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2. -----  
----- 증빙서류

제21조(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)

① -----  
-----  
-----.

- 1.~4. (현행과 같음)
5. -----  
----- 드는 -----

②、③ (현행과 같음)

제24조(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) ① --

-----

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경관지구의 건축물로서 높이 3층 또는 12m 초과, 건폐율 30%를 초과하여 건축하는 건축물
2. ~ 3. (생략)
4.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5조의5제1항제4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

② (생략)

제25조(경관과 관련된 위원회) ① (생략)

② 영 제22조제2호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법 제30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: 법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, 제8호 및 법 제30조제2항
2.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: 법 제30조제1항제5호
3. 도시계획위원회 : 법 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개발사업 중 「국토

-----  
---

1. -----  
--- 12미터 ----- 30퍼센트 -----  
-----
2. ~ 3. (현행과 같음)
4. -----  
-----  
----- 제2조제17호 -----  
-----  
-----

② (현행과 같음)

제25조(경관과 관련된 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1.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 
가. 법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, 제8호 및 법 제3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  
나. 법 제30조제1항 제6호에 따른 개발사업중 「주택법」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
2. ----- 법 제3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
3. -----  
----- 개발사업



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 113조에 해당하는 사항

4. 도시재정비위원회 : 법 제30조제 1항제6호에 따른 개발사업 중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 34조에 해당하는 사항

5. (생략)

③、④ (생략)

제28조(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) 영 제 24조제3호에서 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

2.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

3.、4. (생략)

제29조(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) 법 제 30조제2항제4호에서 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경관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

2.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을 인가 할 때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

3. ~ 5. (생략)

4. -----  
-----  
----- 제 2조제2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

5. (현행과 같음)

③、④ (현행과 같음)

제28조(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) -----  
-----  
-----

1. 법 제7조-----  
-----

<삭제>

3.、4. (현행과 같음)

제29조(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) -----  
-----  
-----.

<삭제>

<삭제>

3. ~ 5. (현행과 같음)

제30조(경관위원회의 운영 등) ① 영 제26조제9항에서 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시장은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,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·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,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입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

2. ~ 3. (생략)

제30조(경관위원회의 운영 등) 영 제26조제9항에서 -----

-----  
-----.

1.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입기가  
끝나기 -----  
-----.

2. ~ 3. (현행과 같음)